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70672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706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517227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광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소송구조)

변론 종결2021. 12. 8.

판결 선고2022. 1. 2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517227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107,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5,618,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일부 변제에 따라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대 3,473m²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8. 3.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88644호로 같은 해 7.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등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E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서 2017. 4. 25. 원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및 E('갑')로, 수급인을 원고('을')로 하는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의 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수급인이 수행할 용역 및 성과물의 표시]

대전 D 내에서 이루어지는 본식 촬영, 리허설 촬영 및 기타 사진 촬영의 제작과 이에 부수한 일체의

행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사진 제작을 의뢰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과 계약갱신)

1. 본 계약은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한다.

제4조(을의 의무)

1. 을은 당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물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을은 갑으로부터 본건 목적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관리보증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자신 보증금에 대해 웨딩홀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기로 동의하여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을에게 납부한 보증금 일억오천만(150,000,000) 원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반환하고, 을은
남아있는 성과물을 하자 없이 모두 갑에게 인도한다.

제8조(지급대금 및 지급시기)

1. 본식촬영: 수정본 CD(서비스내역): 660,000원(결제금액)

리허설 촬영: 20R액자(서비스내역): 600,000원(결제금액)

이벤트 보상금 : 200,000원(결제금액)

2. 갑은 을에게 고객 및 결혼식이 거행된 해당 1주일 안에 을이 수행한 당해업무 대금을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보증금으로서, 2017. 4. 10. 10,000,000원권 수표 5장을 E에게
교부하고, 2017. 4. 17.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시 입금계좌로 기재된 피고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하고, 2017. 4. 25. 10,000,000원권 수표 9장을
E에게 그 아들인 F이 입회한 자리에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에 2017. 8. 1.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66978호로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과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두었다.

바.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는 2017. 5. 13.부터 2019. 6.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피고의 사업장인 대전 D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 리허설 및 이벤트 관련 사진촬영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사진, 앨범 등 그 결과물을 촬영을 의뢰한 당사자들 등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금은 39,16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3,100,000원을 E로부터 변제받았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8. 10. 전세권자로서 54,952,63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50,000,000원과 촬영 대금 중 미지급한 26,060,000원(39,160,000 - 13,100,000)의 합계 176,060,000원(150,000,000 + 26,06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4,952,636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결혼 예식 사진 중 일부가 제작·납품되지 않아서 촬영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피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의 숙모인 E와 그 아들인 F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들을 기초로 하였다거나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된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0. 12. 21.경에야 이 사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신고하였고, 당심의 변론이 종결할 즈음인 2021.

9.경에야 E와 F을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점, ② D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D의 영업 상황에 대해 피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전세금의 액수가 정확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고, 위 보증금이 모두 지급된 직후에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이유는 위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7. 12. 10. D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E와 F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15호증의 2)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점, ⑥ 피고는 2019. 8. 8. '2017년 5월에 원고, J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 D 예약실에서 E에게 사진 보증금 1억5천을 내고 2017년 8월 1.일부터 본식 촬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인 피고는 6월달에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원고, J을 만나서 E에게 처음으로 소개 받았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넣고 본식 촬영과 행사를 촬영 하는 걸 알았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을 E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청구금액 중 인용되는 금액의 계산

1)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의 방법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4,952,636원(원고는 54,953,636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변제충당을 인정하여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76,0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에서 위 배당표가 작성된 2021. 8.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위 배당금을 우선하여 충당하고 그 이외에 남은 배당금을 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전세권에 근거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은 위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의 변제에 충당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금액의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위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반환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전세금의 반환만을 담보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세권이 담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에 한정되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전세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지급을 구할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당금은 위 전세금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배당금이 제1심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우선하여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변제되지 않은 121,107,364원(= 176,060,000원 - 54,952,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일인 202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금 176,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에 대해 위 배당금이 충당되었고, 2019. 7. 3.부터 2021. 8.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 일부에 대해 위 배당금을 충당하였음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원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2019.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에서 그 판시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여 항쟁하였으나, 제1심은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가집행선고를 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도 당심에서도 같은 주장과 입증으로 항쟁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상당액의 변제를 주장하였는바, 위 배당이 실시된 2021. 8. 10.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청구인용 부분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한 피고의 항쟁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68754 판결 취지 참조).